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6.13(금) 04: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FTA 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 이명재 사무관(044-203-5755)

한 · 캐나다 FTA 가서명

□ 2014.6.12(목)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통상차관보(Assistant Deputy Minister, Trade Agreements and Negotiations)는 한 · 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음.

□ 6.12일 가서명된 한 · 캐나다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6.13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상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임.

□ 양국은 2014년 하반기 중 한 · 캐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 한·캐나다 FTA 가서명 사진은 6.13(금) 04:30분 배포예정

참고 1. 한·캐나다 FTA 주요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3.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4. 한·캐나다 교역·투자 현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 044-203-57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 · 캐나다 FTA 주요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주요 협상경과

□ '05.7월～'08.3월간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 '13.11월, 제14차 한·캐 공식협상에서 실질적 진전 확인

□ '14.2월, 수석대표급 협의를 통한 주요 잔여쟁점 처리방안 합의

□ '14.3.11일, 한·캐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잔여쟁점 최종합의 후 한·캐 정상간 FTA 협상 '타결' 선언

□ '14.6.12일, 한 · 캐 FTA 가서명(initialing)

2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하반기중 한 · 캐 FTA 협정 정식서명(Signing) 추진

○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발효 예정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 2 한 · 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1 상품 양허

□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

○ **(캐나다)**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한국)**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 **(캐나다 시장개방)**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키로 한 바, 캐나다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해 즉시/3년철폐, 타이어(7%) 5년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은 즉시/3년철폐 등으로 합의하여 수출확대 기대

○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합의,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

※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

□ **(한국 시장개방)**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12.3%)/한·EU (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

○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13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설정

※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09-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

2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육류)** 육류(닭고기 제외)에 대해 도축기준 인정(한·미 FTA와 동일)

○ **(완성차)**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에 합의

○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

○ **(전자기기 및 기계 등)**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 사용

□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 단, 한 · 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3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한·캐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각국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도입, 조사개시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4 서비스 · 투자

□ **(협정문)**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

○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규정

□ **(시장접근)** 캐측은 NAFTA·캐-EU FTA 등 캐측 FTA 최대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시점('94.1.1)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

○ 우리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

5 정부조달

□ 기본적으로 WTO「정부조달협정(GPA)」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 우리측은 1억원, 캐측은 10만 캐불(7만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시 참여 가능

< 양국 중앙정부 조달 양허 >

	한·캐나다 FTA		개정 GPA	
상품	한국	1억원 이상	한국	13만 SDR* 이상
	캐나다	10만 캐불 이상	캐나다	13만 SDR* 이상
서비스	한국	1억원 이상	한국	13만 SDR* 이상
	캐나다	10만 캐불 이상	캐나다	13만 SDR* 이상
건설	한국	500만 SDR* 이상	한국	500만 SDR* 이상
	캐나다	500만 SDR* 이상	캐나다	500만 SDR* 이상

* 13만 SDR: 약 2.2억 원, 500만 SDR: 약 82.9억원('14.3.4일 IMF 고시 기준)

□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6 규범

□ **(SPS)**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합의

○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 지정 및 SPS 위원회 설치 등

□ **(TBT)** WTO「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양자간 분야별 공동협력 추진(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 등),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개최(년 1회 이상) 등

□ **(지적재산권)**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리 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저작권의 보호강화

○ 지리적 표시 관련, 우리측은 캐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

7 자동차 비관세

□ **(안전기준)**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및 한-EU FTA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캐나다) 캐나다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인용 또는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캐측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내국세/배출기준)**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 관련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 부여 (한-EU FTA와 동일)

□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 절차)** 자동차(부품 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화

※ 한·미 FTA상의 스냅백 조항(협정상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패널이 판정한 이후 즉시, MFN 세율까지 인상 가능)은 미도입

참고 3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 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對캐나다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 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 품목수는 HS 2011년, 수입액은 '09~'11년 수입액 평균

참고 4 한 · 캐나다 교역 · 투자 현황

□ 교 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3,506 (△3.1)	4,057 (15.7)	3,440 (△15.2)	4,102 (19.3)	4,928 (20.1)	4,828 (△2.0)	5,203 (7.8)
수 입	3,254 (5.3)	4,404 (35.3)	3,535 (△19.7)	4,351 (23.1)	6,612 (52.0)	5,247 (△20.6)	4,717 (△10.1)
무역수지	252	-346	-96	-249	-1,684	-419	488
총교역액	**6,760**	**8,461**	**6,975**	**8,453**	**11,540**	**10,075**	**9,920**

※ '13년 기준 캐나다는 우리의 제25위 교역파트너 (수출 23 위, 수입 25위)

□ 투 자

《단위 : 천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 계
캐나다의 대 한 국 투 자	51,141 (46)	89,617 (45)	303,275 (52)	480,345 (53)	739,268 (38)	393,769 (38)	387,599 (60)	<'67- '1 > 5,9 3,0 (731)
한 국 의 대캐나다 투 자	255,222 (112)	150,899 (83)	4,307,241 (63)	953,524 (76)	1,887,055 (99)	878,314 (101)	880,573 (82)	'68 - 1,511,571 (1,199)

※ '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캐나다는 대한국 제10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7위 투자대상

□ 한국의 對캐나다 10대 교역품목 현황(2013년)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승용차	2,227	42.8	유연탄	1,587	33.6
무선전화기	662	12.7	펄프	291	6.2
자동차부품	236	4.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17	4.6
섬유기계	119	2.3	칼륨비료	203	4.3
타이어	99	1.9	동광	184	3.9
냉장고	70	1.3	원목	153	3.2
합성수지	67	1.3	가축육류	91	1.9
집적회로반도체	60	1.2	운반하역기계	76	1.6
밸브	56	1.1	건설중장비	72	1.5
아연도강판	55	1.1	곡류	71	1.5
소 계	3,651	70.1	**소 계**	2,945	62.4
전 체	**5,205**	**100**	**전 체**	**4,717**	**100**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